

의안  
번호

43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03. 19.  
전문위원 강 영 숙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고영욱 의원 외 10명

나. 의안번호 : 제432호

다. 제출일자 : 2025. 02. 28.

라. 회부일자 : 2025. 03. 13.

2. 제안이유

- 간접흡연과 금연구역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인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우리 구민의 건강을 간접 흡연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간접흡연과 금연구역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조)

나. 금연구역 추가 지정(안 제5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3. 6. ~ 2025. 3. 12.

○ 의 견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개요

- 본 개정안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24. 12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 주요내용

#### ○ 안 제2조(정의) 정비

“간접흡연”, “금연구역” 등 정의를 정비한 것으로 “간접흡연”은 보건복지부 2024년 금연구역지정·관리 업무지침을,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를 반영하여 명확하게 규정함.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서울특별시 및 성북구청장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4. ----- 법 제9조의5----- ----- ----- -----.

○ 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정비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구역의 지정대상을 현행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구 관할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로 확대하여 정비함.

이는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2024.12.30.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3. (생략)  4. <u>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u>   5. ~ 8. (생략)   ② ~ ④ (생략)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 」에 따른 <u>구 관할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u>  5.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1)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를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성북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그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개정되는 것이므로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관내 택시 승차대 설치 현황** (총 3개소, 2024년 12월 기준)

연번	위치	지정일	기타
1	동소문로34길 24(돈암동 10-5)	2011-01-30	택시승차대
2	월곡로 106-1(하월곡동 34-44)	2011-01-25	택시승차대
3	종암로 13(종암동 29-47)	2011-01-07	택시승차대

## 붙임 1 관련 법규

###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 2021. 12. 21.>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2023. 8. 16.>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